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 음성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대검찰청에 1명(7급 1명)을, 지방검찰청에 11명(7급 4명, 8급 7명) 각각 증원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판 역량 강화 및 공판부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 2부를 공판부로 통합,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7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전단 중 “4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판제1부, 공판제2부”를 “공판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강력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을 “공판부장”으로,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를 “분장한다”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공판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공판부장”을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으로, “공판송무부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범죄수사과장”을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환수 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
한 사항

제17조제2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④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직범죄수사과장”을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
장”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538”을 “535”로 하고, 일반직 계 “538”을 “535”로 하며,
검찰사무관 “50”을 “49”로, 검찰주사 “85”를 “84”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25”를 “24”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심리연
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33”을 “34”로, 사무운영서기보 “49”를 “48”로 한
다.

별표 2 중 총계 “7,882”를 “7,8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882”를 “7,823”
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5”로, 검찰사무
관 “403”을 “400”으로, 검찰주사 “1,369”를 “1,354”로, 검찰주사보 “1,781”
을 “1,773”으로, 마약수사주사보 “86”을 “85”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35”를 “34”로, 검찰서기 “1,023”을 “1,021”로, 마약수사서기 “6

6”을 “64”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7”을 “46”으로, 검찰서기보 “840”을 “828”로, 마약수사서기보 “54”를 “53”으로, 방호서기보 “140”을 “139”로, 사무운영서기보 “1,255”를 “1,242”로 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사무국	공공수사지원과 수사제1과·수사정보과 수사제2과 수사지원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 ·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제1과·집행제2과· 기록관리과·형사증거과·피해자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사무국	조사과 수사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 ·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과

별표 5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검찰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범죄정보기획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2담당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반부패부 반부패2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반부패부 반부패3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마약·조직범죄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마약·조직범죄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공공수사부 공공수사기획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 략)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 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 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 문 업무를 담당하는 <u>4명</u> (과학기술 서기관 · 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 <u>4명</u>)은 특허청 소속 공무 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생 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5명</u> ----- ----- ---- <u>5명</u> ----- -----. ----- ----- -----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의 수와 분장사무) ① · ② (생 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 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u>공판제1부, 공판제2부</u> 및 사무 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 략)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의 수와 분장사무)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 <u>공판부</u> -----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
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
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
다.

② ~ ⑦ (생략)

⑧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
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
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
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② (생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
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
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
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
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
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
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 공
판송무제2부(인천지방검찰청에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
--.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판부장-----

-- 분장한다.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

한정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
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
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
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
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
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
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
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 ⑨ (생략)

⑩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제
1부장 및 공판송무제2부장은 제
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
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
원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
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

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
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 방위
사업 ·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
판제1부 및 공판제2부-----
-----.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

공 판 제1부 장 및
공 판 제2부 장-----

하며, 각 공판송무부장 간의 사
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
무) ① ~ ⑩ (생 략)

⑪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⑫ ~ ⑮ (생 략)

⑮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
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⑯ ~ ⑳ (생 략)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
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
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 부장 -----
-----.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
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
과장-----.

1. · 2. (현행과 같음)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
는 범죄수익의 추적·환수 사
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
비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⑫ ~ ⑮ (현행과 같음)

⑮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
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
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⑯ ~ ⑳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
와 그 분장사무) ①-----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u>조직범죄수사과장</u>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u>제20조의2(한시정원)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검찰청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 ----- ----- ----- ----- <u>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u> ----- -----. <u><삭 제></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8</u>	<u>535</u>	-3
일반직 계	<u>538</u>	<u>535</u>	-3
·	·	·	
·	·	·	
검찰사무관	<u>50</u>	<u>49</u>	-1
·	·	·	
·	·	·	
검찰주사	<u>85</u>	<u>84</u>	-1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5</u>	<u>24</u>	-1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u>33</u>	<u>34</u>	+1
·			
·			

사무운영서기보	<u>49</u>	<u>48</u>	-1
.	.	.	
.	.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82</u>	<u>7,823</u>	-59
일반직 계	<u>7,882</u>	<u>7,823</u>	-59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5	+1
검찰사무관	<u>403</u>	<u>400</u>	-3
·	·	·	
·	·	·	
검찰주사	<u>1,369</u>	<u>1,354</u>	-15
·	·	·	
·	·	·	
검찰주사보	<u>1,781</u>	<u>1,773</u>	-8
·	·	·	
마약수사주사보	<u>86</u>	<u>85</u>	-1
·	·	·	
·	·	·	

전산주사보	또는	<u>35</u>	<u>34</u>	-1
방송통신주사보				
•		•	•	
•		•	•	
검찰서기		<u>1,023</u>	<u>1,021</u>	-2
•		•	•	
마약수사서기		<u>66</u>	<u>64</u>	-2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47</u>	<u>46</u>	-1
•		•	•	
•		•	•	
검찰서기보		<u>840</u>	<u>828</u>	-12
마약수사서기보		<u>54</u>	<u>53</u>	-1
•		•	•	
•		•	•	
방호서기보		<u>140</u>	<u>13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55</u>	<u>1,242</u>	-13